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가단5220587 판결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

피고1. B

2. C

3. D

4. E

5. F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20. 12. 2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68. 8. 22. 접수 제20015호로 마친 가등기의 각자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68. 8. 22. 접수 제200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G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김상근

별지